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 2019. 1. 15

위원정수 : 7명

재적위원 : 7명

1. 일 시 : 2019. 1. 22(화) 11:00

2. 장 소 : 본 대학 205호 회의실

3. 참석위원 : 손화희(위원장, 교원), 구건서(교원), 유상기(직원),  
김진희(총학생회장), 고정윤(대의원회의장), 박승식(세무사) 이상 6명

4. 불참위원 : 임출리아지영(동아리연합회장) 이상 1명

5. 안 건

가.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등록금 및 비등록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

나.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등록금 및 비등록금) 예산(안) 심의·의결

다. 잉여금처리원칙 심의

6. 회의내용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 「대학교육기관 :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에 따라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음을  
설명하고 참석하신 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위원들에게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

-위원장은 등록금수입이 감소하였고 강의B동(음악당) 환경개선 수리비로 시설관리비는  
증가하였으며, 차세대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이 연기되어 일반관리비는 감소하고,  
교내장학금 118,000,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감가상각비 500,000,000원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고자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8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

-구건서위원이 동의, 박승식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

-등록금회계 예산 심사의결에 이어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예산(안)을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다시 요청하다.

-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5,000,000원을 비등록금회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강의B동(음악당) 환경개선 보수 공사로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어서 위원들은 참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위원은 2018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정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
- 유상기위원이 동의하고, 김진희위원의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
-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교비회계(등록금 및 비등록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위원장은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안)을 검토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요청하다.

-위원장은 2019학년도에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였고, 교직원 법정부담금 일부를 등록금회계에 계상하였고, 학생종합복지관과 강의A동 환경개선 수리비, 차세대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였으나, 그 밖의 관리운영비를 동결 및 실행예산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음을 설명하다.

-자료를 검토한 위원들은 2019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이 2019학년도 인하된 입학금과 1.8% 인상된 수업료 수입 내에서 적정히 편성되었음을 확인하다.

-고정윤위원이 동의, 구건서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

-등록금회계 예산 심사의의결을 마친 위원들은 이어서 2019회계연도 비등록금회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다.

-위원장은 비등록금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심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다.

-위원장은 2019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으로 5,000,000원을 비등록금회계 법인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학생종합복지관과 강의A동 환경개선 보수 공사비, 본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비가 임의건축기금에서 인출하여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을 설명하다.

-박승식위원이 동의하고, 유상기위원이 재청하고 모든 위원이 찬성하다.

-위원장은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등록금 및 비등록금)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위원장은 다음 안건으로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에 의거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들에게 잉여금처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묻다.

-위원장은 우리대학은 입학금 단계적 감소와 2019학년도는 수업료를 인상하였지만

계열(학부)별 입학정원 조정으로 등록금 수입은 감소하였고, 물가상승과 노후건물 보수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매년 이월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설명하고, 추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부족예산 편성에 사용하고, 장학금 등 직접교육비에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구건서위원이 동의하고, 김진희위원이 재청에 이어 모든 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19. 1. 22

위 회의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①	232	1	48	위원장	손 화 희	(인)
				위원	구 건 서	(인)
					유 상 기	(인)
					김 진 희	(인)
					고 정 윤	(인)
					박 승 식	(인)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9. 1. 22

송의여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위원장

송의여자대학교총장 귀하